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41호 2010. 6. 21. (월)

고 시	
-----	--

- 고시 제2010-4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2

공 고	
-----	--

- 공고 제2010-428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예고].....3
- 공고 제2010-428 [공인 등록 공고].....4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일립마당 → 북구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최명수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60-27번지				
점용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명동 282-28번지 ◦ 신명동 282-29번지 	하 천 명	신명천		
점용목적	진출입로	점용면적 (㎡)	구 분	계	5년
			지방하천	60	60
점용기간	◦ 5년 : 2010. 06.15 ~ 201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0-428호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안 제1조)
- 나.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2조 내지 제4조)
- 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의 명시 (안 제5조 내지 제6조)
- 라.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의 명시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마.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17조, 제18조)
- 바.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 (안 제19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362, FAX 219-73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 : 2010년 6월 21일
-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공 인 명	규격(cm)	서 체	인 영
<p>“울산광역시북구청장인”</p> <p>※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 발급</p>	2.4 × 2.4	한글전서체	